

하남시공고 제2020-567호

하남 지역현안사업2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(결정)(안) 열람·공고

1. 하남 도시관리계획(지역현안사업2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·공고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(결정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1)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(결정)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 참조
 - 2) 열람기간 :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
 - 3) 열람장소 : 하남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790-6372)

2020. 4. 6.
하 남 시 장

□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(결정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(결정) 조서 : 변경 없음
2. 용도지역·지구·구역에 관한 변경(결정) 조서 : 변경 없음
3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(결정) 조서
 - 다. 공공문화체육시설
 - 4) 사회복지시설
 - 사회복지시설 변경(결정) 조서

구분	도면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8	사회 복지 시설	-	신장동 574대	5,421.9	-	5,421.9	경기도고시 제2012-388호 (2012.11.30.)	공간적 범위 결정 (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비도시계획시설 건축)

○ 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의 공간적 범위 결정조서

구 분	도 면 번 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 경	8	사회 복지 시설	-	신장동 574대	5,421.9	-	5,421.9	경기도고시 제2012-388호 (2012.11.30.)	공간적 범위 결정 -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비도시계획시설 건축 (비도시계획시설의 경우, 전체 연면적(지하층 포함)의 45% 이하만 가능)

○ 사회복지시설 변경(결정) 사유서

도 면 표 시 번 호	공원명	변경 내용	변경(결정) 사유
8	사회 복지 시설	·지번변경 - 기정: 신장동 367-3답 일원 - 변경: 신장동 574대 ·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공간적 범위로 구분함	·확정측량에 따른 지적 변경 ·도시계획시설부지에 비도시계획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함

- ※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지적 변경 사항으로 조서 생략(열람장소 비치)
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(결정) 조서 : 변경 없음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(결정) 조서
1) 기타공공용지(제1종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)

도 면 표 시 번 호	위치	구분		계획내용(기정)
-	공공1 (사회 복지 시설)	용도	기정	·노유자시설 ·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, 나목 (단, 바닥면적의 20% 이내에서 1층 이하에 한하여 허용)
			변경	<도시계획시설> ·노유자시설 ·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 가목, 나목 (단, 바닥면적의 20% 이내에서 1층 이하에 한하여 허용)
				<비도시계획시설> ·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 바목 ·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4호 (단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4호 나목 2)오피스텔은 제외)
		불허		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	60%이하
		용적률		300%이하 (단, 비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전체 연면적(지하층 포함)의 45%이하만 가능)
		높 이		8층 이하
		배 치		·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·통풍을 고려하여 배치
		형 태		·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음. 단, 안전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음 ·평지붕 설치시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함
		색 채		·단정하고 온화한 느낌의 Beige 계열의 주조색과 Brown계열의 강조컬러로 깔끔하고 정돈된 이미지 연출 권장
		건축선		·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, 그 건축한계선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돌출 또는 배치할 수 없음 ·건축한계선 : 3m

- 바. 기타사항에 관한 변경(결정) 조서 : 변경 없음
사. 경미한 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(결정) 조서 : 변경 없음